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보험업법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자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②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자체 없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손해사정사(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2. 21., 2024. 2. 6.>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6.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손해사정사의 의무)** ① 손해사정사는 [법](<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0658&chrClsCd=010201#AJAX>)[제188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0658&chrClsCd=010201#AJAX>)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자체없이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자격을 표시한 후 서명([「전자서명법」]<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0658&chrClsCd=010201#AJAX>)[제2조제2호]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0658&chrClsCd=010201#AJAX>)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하여 보험회사([법](<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0658&chrClsCd=010201#AJAX>)[제185조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0658&chrClsCd=010201#AJAX>))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독립 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어 서류접수 완료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 2. 28., 개정 2024. 7. 29.> ② 손해사정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서의 내용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9-16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① [법](<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0658&chrClsCd=010201#AJAX>)[제185조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0658&chrClsCd=010201#AJAX>)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은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 피해자 ·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개정 2024. 7. 29.> ② [법](<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0658&chrClsCd=010201#AJAX>)[제185조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0658&chrClsCd=010201#AJAX>)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착수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7. 29.> ③

[법](<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0658&chrClsCd=010201#AJAX>)[제185조제2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0658&chrClsCd=010201#AJAX>)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이란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 7. 29.> 1.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법](<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0658&chrClsCd=010201#AJAX>)[제187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0658&chrClsCd=010201#AJAX>)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한 자일 것 2.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법](<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0658&chrClsCd=010201#AJAX>)[제186조의2]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0658&chrClsCd=010201#AJAX>)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제9-21조의2]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0658&chrClsCd=010201#AJAX>)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4. [법](<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0658&chrClsCd=010201#AJAX>)[제185조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0658&chrClsCd=010201#AJAX>)의 동의와 관련하여 협회가 마련한 보험회사의 표준동의기준에 부합할 것 ④ 보험계약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보험회사와는 별개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24. 7. 29.> 1.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거나 별도의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 ⑤ 보험계약자 등이 제2항 및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7. 29.> ⑥ 보험계약자 등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9.> ⑦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는 [법](<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0658&chrClsCd=010201#AJAX>)[제185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0658&chrClsCd=010201#AJAX>)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2. 2. 28., 개정 2024. 7. 29.> ** 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손해사정서 접수 및 처리절차 등)** ①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거절하지 못하며, [제9-18조제1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0658&chrClsCd=010201#AJAX>)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금을 심사 ·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보험금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를 보험금청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 · 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때 2.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 3.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4.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③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정정 · 보완("이하 보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손해사정사 또는 보

험금청구권자에게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이하 이 조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31.> ④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금청구권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손해사정서를 보정하거나 기 제출한 손해사정서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서면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31., 2024. 1. 31.> ⑤ 보험회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금을 심사·지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보정을 요청할 수 없다. 1. 보정서 또는 의견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 2.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기준의 보정요청에 대하여 보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 <개정 2004. 3. 31.> ⑥ 보험회사는 [제9-18조제1항](<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

admRulSeq=2100000250658&chrClsCd=010201#AJAX)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절차에 따라 확정된 손해사정서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을 정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 3. 31.> 1.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결정된 경우 2.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내용의 부당함에 대한 근거 및 자료를 서면등으로 제출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된 경우 <개정 2024. 1. 31.> 3. 보험회사가 결정한 보험금을 보험금청구권자가 수용한 경우 <신설 2004. 3. 3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8조(손해사정서 기재사항 등)**

① [감독규정](<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

admRulSeq=2200000106273&chrClsCd=010201#AJAX)[제9-18조제1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

admRulSeq=2200000106273&chrClsCd=010201#AJAX)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은 독립손해사정사에 한한다. <개정 2022. 4. 27.> 1. 손해사정 수임일자, 수임내용 및 위임자 인적사항(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포함한다)등 수임계약 내용 2.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의 성명, 등록번호(보조인의 경우 법)(<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

admRulSeq=2200000106273&chrClsCd=010201#AJAX)[제178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

admRulSeq=2200000106273&chrClsCd=010201#AJAX)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단체에 신고한 현황 등 해당 손해사정사의 보조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연락처 등 인적사항 <개정 2022. 4. 27.> 3. 보험계약 사항 4. 사고 및 손해조사내용(손해액 사정에 관한 중요 근거 및 결과를 포함한다) <개정 2022. 4. 27.> 5. 손해사정시 적용된 관계법규 및 약관 <개정 2022. 4. 27.> 6. 약관상 보험자 지급책임의 범위(보험금 사정에 관한 중요 근거 및 결과를 포함한다) <개정 2022. 4. 27> 7. 그 밖에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항 <신설 2022. 4. 27.> 8. 보수청구서(실비변상적 추가경비 명세표를 포함한다) <신설 2022. 4. 27.> ② [감독규정](<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

admRulSeq=2200000106273&chrClsCd=010201#AJAX)[제9-18조제2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

admRulSeq=2200000106273&chrClsCd=010201#AJAX)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관한 중요 근거 및 결과 2. 손해사정시 적용된 관계법규 및 보험약관 3. 그 밖에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항